【항만시설 무단출입 방지 안내문(안)】

항만보안 안내

무허가 동승자, 컨테이너부두 출입 금지

화물차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사전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동승자는 항만시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

운전자가 정상적인 출입권한(출입증·바코드 등)을 가지고 있어도, 그 권한이 동승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
1. 반드시 지켜주세요

○ 가족·지인·직원 등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동승자를 태운 채 항만시설에 진입하지 마십시오.

○ 차량 출입용 출입증·바코드 등은 차량 또는 운전자의 출입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며, 동승자의 출입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
○ 게이트 진입 전 차량 내 동승자 유무를 확인하고, 무허가 동승자가 있는 경우 항만시설 밖에서 하차하여야 합니다.

2. 무단출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

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제1항제3호	항만시설 내 지정된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금지
같은 법 제52조	**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** **-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위반 시 200만원, 3차 위반 시 300만원**

3. 불가피하게 동승이 필요한 경우

운전연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동승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

해당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에 사전 신청하여 신원확인 등 정해진 출입허가 절차를 완료하십시오.

무허가 동승자를 태운 채 항만시설에 진입하지 마십시오.